

# 우송정보대학 학칙

제정 1979.03.01

82차 개정 2024.01.30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우송정보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학사운영·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7.>

**제1조의2(교육목표)** 한국대표 명장을 키우는 명품대학인 본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3.8.7.>

**제2조(명칭)** 본 대학은 우송정보대학이라 한다.

**제3조(위치)** 본 대학은 대전광역시 동구 백룡로 59(자양동 101-17)에 둔다. <개정 2017.2.1.>

**제4조(설치학과(부) 및 입학정원)** 본 대학에 두는 학과(부) 및 입학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할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1., 2018.2.1., 2018.4.16., 2020.2.3., 2021.2.1., 2021.7.12., 2022.4.25., 2023.8.7.>

**제4조의2(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 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직업훈련과정 및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3(계약에 의한 학과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①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은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별도로 편성하고, 자세한 내용은 산업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계약학과 등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학칙 제31조(졸업 및 수료)에 따른다. 단, 계약학과 등에 입학한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등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계약학과 등의 수업은 산업체의 학습실과 본 대학에서 출석수업과 현장실습수업·원격수업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4조의4(계약학과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①계약학과에 입학(재입학 포함)할 수 있는 자는 본 학칙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 ②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 선발절차는 본 학칙과 제 규정에 따르되,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4조의5(계약학과 학생정원)** ①제4조의4제1항제2호에 의한 계약학과의 편성 및 입학정원은 [별표 2] 와 같다.

②제4조의4제1항과제1호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100분의 20. 다만,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학 학생 수 또는 입학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7.8.1.>

**제4조의6(계약학과 운영경비 및 부담)** ①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 대학 교비 회계로 충당한다. <개정 2019.1.11.>

②운영경비는 제1항의 경비 외에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을 포함한다.

**제4조의7(계약학과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제4조의4제1항제1호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생에게는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고, 제4조의4제1항제2호에 의한 계약학과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의8(계약학과 학기 및 수업일수)** ①계약학과 등의 학년 및 학기는 본 대학 학칙 제8조(학기운영), 제9조(수업일수)에 따른다.

②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③기타 사항은 본 대학 학칙 제3장에 준한다.

**제4조의9(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 ①해당 학과 등의 설치·운영기간은 2년(4학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학과의 학생 중에 본 대학 학칙 및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규정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사정에 통과한 자에게는 본 대학 학칙 제31조(졸업 및 수료)의 서식에 의한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4조의10(계약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계약학과가 설치·운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관련 학과에 소속시키며, 당해 계약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업이수, 납입금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 대학의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학칙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4조의11(자기설계자율전공)** 자기설계자율전공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학생은 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이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0.1.]

##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개정 2023.8.7.>

**제5조(수업연한)** ①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3년 또는 4년으로 한다. <개정 2018.4.16., 2023.8.7.>

②언어치료과와 유아교육과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8.4.16. 2020.2.3., 2023.8.7.>

③간호학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18.4.16., 2023.8.7.>

④본 대학에 등록하여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충족하고,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이 평점평균 4.0이상인 자는 수업연한의 4분의1 이내로 단축하여 조기졸업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4.16., 2023.8.7.>

**제6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3.8.7.>

##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휴업일

**제7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 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운영)** ①학기는 1학기과 2학기과 나누되 학기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매 학년도 학사력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01., 2020.2.3., 2021.2.1.>

②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학기제 또는 실습학기제, 계절수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2.1.>

**제9조(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②천재, 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0조(휴업일)** ①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

1. 일요일

2. 법정공휴일 <개정 2023.8.7.>

3. 개교기념일 : 10월 15일

4. 근로자의날 : 5월 1일 <신설 2019.1.11.>

②삭제 <2023.8.7.>

③총장은 비상재해 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④총장은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경우 수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7.>

제10조의2(임시휴업) 총장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8.7.>

## 제4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11조(입학시기) 입학(편입학, 재입학을 포함한다.)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28일) 이내로 한다. 단, 학사일정 운영을 위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개시일 이전에 입학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2.1.25>

제12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3조(입학지원) ①입학지원에 관한 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모집요강을 따른다. <개정 2022.1.25>

1. 삭제 <2022.1.25>
2. 삭제 <2022.1.25>
3. 삭제 <2022.1.25>
4. 삭제 <2022.1.25>

제14조(입학전형) ①입학전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공표한 해당 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범위내에서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2.1.25>

1. 삭제 <2022.1.25>
2. 삭제 <2022.1.25>
3. 삭제 <2022.1.25>
4. 삭제 <2022.1.25.>
5. 삭제 <2022.1.25.>
6. 삭제 <2022.1.25.>

②총장은 입학전형을 위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전까지 공표한다. <개정 2022.1.25>

제14조의2(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 ①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4.16., 2023.8.7.>

②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4.16., 2023.8.7.>

제14조의3(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제도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의4(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25.]

**제15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입학허가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납과 차등납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5>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취소를 할 수 있다.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 <개정 2022.1.25>
2.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개정 2022.1.25>
3.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입학지원방법을 위반한 자 <개정 2022.1.25>
4. 기타 입학모집요강 등에서 총장이 정하는 입학지원방법을 위반한 자 <신설 2022.1.25>

**제16조(편입학)** ①전문대학 및 대학 1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제2학년 1학기에 편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학생의 편입학은 매학기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편입학은 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모집이 가능하며, 편입학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의2(전과)** ①교내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자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7.8.1., 2020.2.3.>

②전과는 전입학과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단, 유아교육과 및 간호학과의 경우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개정 2014.12.1., 2022.1.25>

③전과한 자는 전입학과의 전공 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전과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학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1.>

④삭제

⑤삭제

**제17조(재입학)** ①제적(자퇴자 포함)자에 대하여는 동일학과에 한하여, 동일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적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1., 2016.7.18.>

1.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적된 자 중 제2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에 해당하

는 제적자

2. 학교 및 교직원의 명예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자 <신설 2016.7.18.>

3.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케 한 자 <신설 2016.7.18.>

②재입학 허가년도를 기준으로 1·2학년 학생 중 제적자 총수에서 편입, 재입학자 총수를 제외한 인원만큼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교원양성과 관련된 학과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③재입학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28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7.18., 2023.1.30.>

④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장의 추천과 교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6.7.18.>

**제18조(등록)** ①입학이 허가된 자는 총장이 정하는 기간안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장 휴학, 복학, 퇴학, 자퇴 및 제적

**제19조(휴학 및 복학)** ①질병, 병역의무, 창업, 임신, 출산, 육아,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기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을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 2023.1.30., 2023.8.7.>

②휴학은 군휴학, 일반휴학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8.7.>

1. 군휴학 : 병역의무 복무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명령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2. 일반휴학 : 질병, 창업, 임신, 출산, 육아,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은 병·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진단서, 창업등록증, 연수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③휴학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0.1. 2024.01.30.>

④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3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1.30.>

⑤삭제

⑥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학기 초에 복학을 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⑦학기 개시일로 부터 4주(28일) 이후 전역예정자 중 전역 전에 수업참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및 휴가증 등을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23.1.30.>

**제20조(퇴학)** 총장은 학생이 학칙 제44조(징계)에 의거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퇴학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3.8.7.>

**제20조의2(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

**제21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단, 제7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일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3. 삭제
4. 통산 3회 이상 학사경고자로서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6장 교과, 수업 및 평생교육

**제22조(교육과정)** ①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 일반교과로 구분하며 학점 배점 기준은 교양교과 5% ~ 15%, 전공교과 85% ~ 95%로 한다. 다만, 학점 배점기준은 학과(부)의 특성에 따라 10%의 범위안에서 구성·운영할 수 있다. 또한, 전공교과는 학과(부)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50%이상의 실험실습을 편성, 운영한다. 단, 일반교과는 필요시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5.2.1., 2016.2.1., 2016.10.1. 2024.01.30.>

②각 학과(부)별 교육과정은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또는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2.3.>

③전공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본 대학 교육과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④삭제 <2019.1.11.>

⑤삭제 <2014.12.1.>

⑥삭제 <2019.1.11.>

**제22조의2(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총장은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계고등학교, 산업대학, 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②연계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의3(국내·외 타 대학 등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본 대학에 국내·외 타 대학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5>

②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의4(학부내의 전공배정)** 2개 이상의 전공이 설치된 학부로 입학한 자의 전공은 본인의 지망과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학년 2학기 개시전까지 배정하며, 전공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신설 2018.4.16.>

**제23조(비정규특별과정 운영)** ①본 대학에는 3개월 내지 1년 과정의 비정규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비정규특별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해서 설치한다.

③비정규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1.>

**제23조의2(시간제등록생)** ①제12조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본 대학에 등록하여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인원, 선발방법, 이수학점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3조의3(평생교육과정 등의 운영)** ①본 대학에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평생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3조의4(전공심화과정의 운영)** ①본 대학에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위하여 전공심화 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3조의5(산업체위탁교육)** ①총장은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②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3조의6(학점은행제)** ①본 대학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본 대학에서 40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2024.01.30.>

②기타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7(현장실습이수)** 국내 및 국외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5.>

**제24조(교과이수 및 학점취득)** ①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단, 인증평가를 받는 학과는 인증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0.1., 2020.2.3.>

②수업연한 2년제 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은 70학점 이상으로 하고 수업연한 3년제 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10학점 이상으로 하며, 수업연한 4년제 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4.16., 2019.1.11., 2023.1.30., 2024.01.30.>

③학생은 매 1,2학기는 10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 학년도 48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졸업 직전학기에는 졸업 잔여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9학점 이하를 이수할 수 있다. 단, 다학기제 적용 학과(부)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1., 2020.2.3.>

④하계 또는 동계방학 기간 중에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현장실습 교과목은 24학점 이내에서 이수하되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01. 2017.8.1., 2021.11.15.>

⑥삭제

⑦삭제

⑧삭제 <2023.8.7.>

⑨삭제 <2023.8.7.>

⑩삭제 <2023.8.7.>

⑪졸업학기에 취업할 경우 재직증명서류 등을 확인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0.1.>

**제24조의2(학점 및 교과목이수 인정)** ①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본 대학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범위 안에서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3.8.7.>

1. 본 대학과 약정된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3/4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3.8.7.>

2.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간 12학점 범위 안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3.8.7.>

3. 신입학자 중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

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졸업학점의 10% 범위안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3.8.7.>

②편입학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교양교과 및 전공교과 학점으로 졸업학점의 10% 범위안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3.8.7.>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신설 2023.8.7.>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신설 2023.8.7.>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신설 2023.8.7.>

③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8.7.>

**제24조의3(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제25조(수업)** ①매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해당 학기 수업개시 전에 총장이 공고한다. <개정 2023.8.7.>

②강의시간표는 강의개시 1개월 이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한다. <삭제 2017.8.1.> <신설 2023.8.7.>

③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7.8.1., 개정 2023.8.7., 2024.01.30.>

④본 대학 학과(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간, 야간, 주중, 주말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혼합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야간과 주말에 수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강 학생들의 동의를 얻은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1.15., 개정 2023.8.7.>

⑤삭제 <2023.8.7.>

⑥학점당 수업시간은 최소 15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5.>

**제25조의2(계절수업)** ①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계 또는 동계방학 기간 중에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8.7.>

②계절수업의 학점취득은 수업연한 중 12학점까지만 인정한다. <신설 2023.8.7.>

③계절수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8.7.>

**제25조의3(집중수업)** ①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절수업 등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8.7.>

②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8.7.>

**제25조의4(융합 마이크로디그리 및 연계전공 운영)**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기술향상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재학생에게 다양한 전공체험 및 진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융합 마이크로디그리 및 연계전공을 운영하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8.7.>

**제25조의5(학습경험 학점인정)** 본 대학 및 본 대학과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타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개설된 교과목의 이수자가 아닌 다른 학교,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 그리고 근무경험을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졸업학점의 20% 범위 안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8.7.>

**제25조의6(교수시간)** ①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신설 2023.8.7.>

②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12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8.7.>

**제25조의7(출석의무)** 학생은 수강신청한 전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제25조의8(출석인정 및 학습권 보장)** ①학생의 징병검사, 예비군 동원·훈련, 상고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8.7.>

②총장은 제1항의 징병검사, 예비군 동원·훈련 등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업 보충 등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③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8.7.>

##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26조(평가지험)** ①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학기중 중간시험을 행할 수 있다. <신설 2023.8.7.>

②성적평가는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을 병용하되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

③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시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30., 개정 2023.8.7.>

④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개정 2023.8.7.>

**제26조의2(NCS기반 직무능력성취도 평가)** ①총장은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2항

에 따라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별도로 NCS기반 직무능력완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1.>

②제1항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성적)** ①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1., 2023.8.7.>

②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교과목 성적이 Do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7.8.1., 2019.8.5.>

등급	평점	등급	평점
A+	4.5	Co	2.0
Ao	4.0	D+	1.5
B+	3.5	Do	1.0
Bo	3.0	F	0
C+	2.5	P/I	불계/평가보류

③제26조제2항에 따른 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④성적평가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학업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성적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다만, 교육과정상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절대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0.1.>

⑥성적평가 기간 중 성적평가가 불가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성적평가를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으며 보류기간 동안 성적평가 등급은 I로 표기한다. <신설 2019.8.5.>

**제28조(진급인원) 삭제**

**제29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신설 2023.8.7.>

2.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신설 2023.8.7.>

3.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신설 2023.8.7.>

4.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 <신설 2023.8.7.>

**제30조(학사경고)** 1학기말 또는 2학기말 성적평가 결과 평점평균이 1.25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제31조(졸업 및 수료)** ①본 대학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4조제2항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1997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학칙 제24조제2항에 위배되어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별지 제3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3.1.30.>
2. 삭제 <2023.1.30.>
3. 삭제 <2023.1.30.>
4. 삭제 <2023.1.30.>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1학년 수료	35	37	32
2학년 수료	70	74	64
3학년 수료		110	98
4학년 수료			130

<개정 2019.1.11., 2023.1.30., 2024.01.30.>

④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31조의2(조기졸업)** ①본 대학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제24조제2항의 졸업학점을 충족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②조기졸업 희망자는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의 개강 후 4주 이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

③조기졸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1조의3(학위수여의 취소)** ①본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학위수여 취소 해당 학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50조(법 제59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2.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사학위 <신설 2015.2.1.>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른 학사학위 <신설 2019.1.11.>

**제31조의4(졸업의 유예)** ①제31조제1항에 따른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9.8.5., 개정 2023.8.7.>

②졸업유예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8.7.>

**제32조(유급)** ①삭제

②삭제

## 제8장 학생활동

**제33조(학생자치기구)** ①본 대학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인 학생회를 설치한다. <신설 2016.10.1.>

②본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개정 2016.10.1.>

③삭제 <2016.10.1.>

④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0.1.>

**제34조(학생회 회비)** 삭제 <2016.10.1.>

**제34조의2(학생지도위원회)** ①학생생활과 학생자치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②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자치기구의 조직과 운영, 회칙 등의 제정과 개정, 학생상벌, 학생복지 및 기타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심의한다.

[본조신설 2016.10.1.]

**제35조(학생회 이외의 학생단체 승인)**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학생활동의 제한)** ①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시위, 성토, 등교 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개정 2016.10.1.>

②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10.1.>

③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

**제37조(학생지도)** 총장은 매 학년 초 학생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며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의뢰

#### 4.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제39조(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처벌)**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 포함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제40조의2(장애학생의 지원)** ①본 대학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의 수업 및 대학내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장애학생의 지원 및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6.7.18.>

**제40조의3(집단활동)** ①학생들의 집단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신입생을 위한 학과 및 학교 오리엔테이션
2. 학과, 학생회, 대의원회, 동아리주관 활동
3.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대학축제, 체육대회
4. 기타 총장이 인정한 집단 활동

②학생들의 집단활동을 주관하는 학생대표는 집단활동계획서를 활동개시일 15일 전까지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부)장은 지체 없이 총장에게 집단활동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총장은 활동개시일 일주일전까지 행사(활동)를 주관하는 학생대표와 책임지도교수(이하 학생대표와 책임지도교수를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집단활동을 주관하는 책임자는 집단활동 기간동안 학생들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에 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

⑤집단활동 중 인권침해 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인권침해 행위자와 집단활동을 주관하는 책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제5항에 해당하는 집단활동에 대하여는 운영중지, 폐쇄, 재정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0.1.]

## 제9장 규율과 상벌

**제41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서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42조(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없이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질병으로 결석이 7일을 초과할 때에는 종합병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

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44조(징계)** ①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2016.10.1.>

1. 본 대학 학칙을 위반한 자 <개정 2023.8.7.>
2. 수업이나 연구활동을 방해한 자 <개정 2023.8.7.>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가망이 없는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자

②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7.18.>

③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심의회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7.18.>

④징계절차 등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 상벌에 관한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6.7.18.>

## 제10장 등록금 <개정 2023.8.7.>

**제45조(등록금)** ①학생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학기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실험 또는 실습비, 학생자치회비, 기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납부한 등록금 중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제45조의2(장애학생 학점등록)** ①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②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의3(등록금심의위원회)** ①「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8.7.>

②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

**제46조(등록금의 감면)** ①「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 대하여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8.7.>

③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게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2023.8.7.>

## 제11장 장학금 <개정 2016.7.18.>

**제47조(장학금)** ①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평균 B급 이상인자로서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학업성적이 평균 C급 이상인자로서 생활이 극빈한 자

②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③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7.18.>

## 제12장 교수회 및 기타위원회 <개정 2016.10.1.>

**제48조(구성)** ①본 대학에는 교수회를 두며,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0.1.>

②삭제 <2016.10.1.>

**제49조(소집 및 기능)** ①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0.1.>

②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0.1.>

1. 삭제 <2014.12.1.>
2. 입학, 진급, 졸업에 관한 사항
3.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5.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0.1.>

③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신설 2016.10.1.>

**제49조의2(교무위원회)** ①총장의 자문에 응하고 본 대학의 기본적인 정책사항을 종합심의회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교무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0.1.]

**제49조의3(제위원회)** ①총장은 대학의 교육 및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0.1.]

## 제13장 직 제

**제50조(교직원)** ①본 대학에는 총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의 교원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0.1., 2019.8.5.>

②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8.5>

1. 초빙교원: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공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당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2. 겸임교원: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공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거나 창업관련 경력이 있는 자

3. 삭제 <2019.8.5.>

③총장은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임용 및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1. 임무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학협력 정책제안, 산학협력 관련 외부사업의 기획 및 운영, 산업기술 정보제공,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지도, 학생 현장실습 지도, 산학협력 교육 등의 산학협력 사업 활동 전반에 전념하여야 한다.

2. 임용 및 지정방식

가. 신규임용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우송학원 이사장이 임용한다.

나. 이 규정 시행 이전 임용된 전임교원 중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할 수 있다.

다.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제반사항은 교원인사규정에 의한다.

3. 평가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평가는 교원인사규정에 따르며, 산학협력 관련 임무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교원의 승진, 재임용, 연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4. 산학협력중점교수와 관련하여 학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④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및 계약기간, 임금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8.5.>

**제50조의2(교직원의 임무)** ①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교원은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만 전담할 수 있다.

③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④조교는 행정사무,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개정 2016.10.1.>

**제51조(조직)** ①본 대학에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학사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개정 2015.2.1., 2016.7.18.>

②각 부서에는 부서의 장을 두고, 부서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개정 2016.2.1., 2016.7.18.>

③각 부서의 직제 및 사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7.18.>

## 제14장 부속기관

**제52조(부속기관)** ①본 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부속기관 : 우송도서관, 기숙사, 취업지원센터, 우송정보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평생교육원, 창업교육센터, 지역연계지원센터, Industry 4.0센터, Global협력센터, 교양교육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보건실, 기업협업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 인권센터, 성인학습지원센터, ESG센터 <개정 2015.3.25., 2016.2.1., 2016.7.18., 2016.10.1., 2017.2.1., 2018.4.16., 2020.2.3., 2022.2.23., 2023.8.7., 2024.01.30.>

2. 부설기관 : 우송예술회관, 우송스포츠센터, 한국어교육센터, 우송기술교육원 <개정 2014.12.1., 2020.2.3., 2022.2.28., 2024.01.30.>

②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③부속기관 중 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도서관의 발전종합계획, 예산, 조직,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자료 등의 이용, 그 밖의 중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은 이 학칙에 의거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6.2.1.>

**제52조의2(산학협력단)** ①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우송정보대학 산학협력단을 설립·운영 한다

②제1항의 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의 법인 정관 및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2조의3(학교기업)** ①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의 학과(부)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용

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②학교기업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52조의4**(학교기업 설치) ①삭제 <2016.10.1.>

②삭제

③삭제

**제52조의5**(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는 제24조제 5항에 따라 시행한다.

②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의 현장실습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2조의6**(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기준) ①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②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③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 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⑤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5장 기 타

**제53조**(학칙 제·개정 절차) ①학칙을 제·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③본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학칙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제반 학칙의 공포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다.

⑥관련법령, 정관 등의 상위 규범의 개정사항의 반영, 단순한 자구 수정,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과 같이 기술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은 위 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01.30.>

**제54조(성희롱·성폭력 예방)** ①본 대학 구성원을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6.7.18., 2017.2.1., 2022.2.23.>

②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7.18., 2017.2.1., 2022.2.23.>

**제55조(자체평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에 따라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대학자체 평가를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학과 개편 및 정원조정)** ①본 대학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학교육 환경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과 개편 및 정원조정을 할 수 있다.

②학과 개편 및 정원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7.18.]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79.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대전초급대학은 재학생(휴학자 포함 이하 같다.)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휴학생이 복학할 수 있는 기간은 1983학년도까지로 한다.

②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0. 3.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1. 3. 1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제8조, 제17조 및 제22조는 1980. 3.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1. 9.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2. 3.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3. 11. 28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 제24조제5항은

198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학칙 시행당시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학칙 시행당시 재적생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4학년도말까지 학과의 명칭 변경 또는 폐지되는 소속 학과의 학생으로서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의 학생은 변경된 학과의 학생으로 보며 폐지되는 학과의 학생은 그 학생에 대한 졸업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전과 또는 편입학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988학년도까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4. 3.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4. 9.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5.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소속된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5학년도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학과의 학생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5. 1.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자격고사 합격자 처리) 1981학년도 이후 198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중 전문대학 전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로서 졸업정원에서 제외된 자가 전문대학 졸업자격고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86. 1. 29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6. 12.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졸업자격고사 합격자 처리) 1981학년도 이후 198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중 전문

문대학 전 과정을 이수한자 또는 이수예정자로서 졸업정원에서 제외된 자가 전문대학 졸업자격고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7. 3. 3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정원 감축학과와 졸업정원 적용에 관한 특례) 졸업정원 감축학과와 졸업정원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학 과	졸업정원	적 용 학 년 도		비 고
		부 터	까 지	
경 영 과	360 240	- 1987	1986 1988	
세무회계과	160	1986	1988	
행 정 과	360 240	- 1987	1986 1988	
식품영양과	120	1986	1988	
관광경영과	120	1987	1990	
무 역 과	120	1986	1987	
가정관리과	120	1986	1987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8.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정원을 입학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198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16조, 제1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 학과가 신설·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9.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디자인과 학과 개편에 따른 광고과 학생 소속변경) 광고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광고디자인과의 소속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9. 7. 15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0.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영어통역과 학과 개편에 따른 관광통역과 학생 소속변경) 관광통역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0학년도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관광영어통역과의 소속으로 본다. 단, 1984학년도부터 1988학년도 사이에 관광통역과 일어난 공으로 입학한 자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0학년도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관광영어통역과의 소속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1. 3.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1. 8. 5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2. 3.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3. 3.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3. 8. 21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4. 3.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5.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 경과조치) 제22조제1항의 규정은 199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1994학년도 이전 입학자중 1995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광고디자인과(야간)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광고디자인과(주



간)학생으로 보며, 본인이 야간을 원 할 경우에는 산업디자인과(야간)로 전과 복학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6. 8. 9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7. 1. 13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7.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예조경과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원예과 학생 소속변경) 원예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원예조경과의 소속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7. 8. 14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8.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 및 학과 통폐합에 따른 학생 소속변경) 축산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동물과학과의 소속으로 보며, 관광경영과.관광영어통역과.관광일어통역과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관광계열의 소속으로 한다. 단, 관광계열의 전공분류 후에 복학 및 재입학하는 경우 관광경영과 재적생은 관광경영전공으로, 관광영어통역과 재적생은 관광영어통역 전공으로, 관광일어통역과 재적생은 관광일어통역 전공 소속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8.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실업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우송정보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9.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 및 학과통폐합, 계열모집에 따른 학생 소속변경) 학과 명칭 변경 및 학과통폐합, 계열모집에 따른 학생 소속변경은 변경 전에 소속된 학과의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아래의 변경된 계열(학과)의 소속으로 한다. 단, 소속 계열(학과)가 폐과된 경우에는 타 계열(학과)에 전과 복학 할 수 있다.

변경 전 학과	변경 후 계열(학과)
경영과, 세무회계과, 무역과	비즈니스정보계열
비서과	비서사무정보과
전자계산과	전산정보계열
행정과	행정사무정보과
법률과	경영법률정보과
가정관리과, 여성교양과	사회복지계열
의상과	패션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광고디자인과	정보디자인계열
사회체육과	사회체육처방과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0.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 및 학과통폐합, 계열모집에 따른 학생 소속변경) 학과 명칭 변경 및 학과통폐합, 계열모집에 따른 학생 소속변경은 변경 전에 소속된 학과의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아래의 변경된 계열(학과)의 소속으로 한다. 단, 소속 계열(학과)가 폐과된 경우에는 타 계열(학과)에 전 복학 할 수 있다.

변경 전 계열(학과)	변경 후 계열(학과)
비즈니스정보계열	경상정보계열, 세무회계정보계열
관광계열	관광·외국어계열
사회복지계열	사회복지과

제3조(경과조치) 학칙 제6조제1항의 규정은 2000. 3. 1이전에 재학년한 초과로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00. 10. 1)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1.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 및 학과통폐합, 계열모집에 따른 학생 소속변경) 종전의 행정사무정보과와 경영법률정보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말 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경찰행정·법무계열 소속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01. 4. 26)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01. 8. 6)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2.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 및 학과통폐합, 계열모집에 따른 학생 소속변경) 아래에 해당하는 변경전의 계열 및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 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된 계열 및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변경 전 계열 및 학과	변경 후 계열 및 학과
경상정보계열	디지털경상정보계열
전산정보계열	컴퓨터정보통신계열
조리과학과	외식조리과
방송음악과	실용음악과
사회체육처방과	사회체육과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2. 3. 27)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2. 8. 23)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 및 학과통폐합, 계열모집에 따른 학생 소속변경) 아래에 해당하는 변경전의 계열 및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 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된 계열 및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변경 전 계열 및 학과	변경 후 계열 및 학과
비서사무정보과	비서정보과
세무회계정보계열	세무회계정보과
동물과학과, 원예조경과	환경코디네이션, 동물과학계열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4. 1. 16) 다만, 산학협력단의 설립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 조치) 종전의 계열/학과 명칭 변경 및 통폐합, 계열 모집에 따른 학생 소속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명칭변경, 통폐합된 계열/학과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폐지 등의 경우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계열/학과의 소속으로 보며, 복학 시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 조치) 종전의 계열/학과 명칭 변경 및 통폐합, 계열 모집에 따른 학생 소속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명칭변경, 통폐합된 계열/학과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폐지 등의 경우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계열/학과의 소속으로 보며, 복학 시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4. 6. 11)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4. 12. 13)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5. 12. 3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 조치) 종전의 계열/학과 명칭 변경 및 통폐합, 계열 모집에 따른 학생 소속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명칭변경, 통폐합된 계열/학과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폐지 등의 경우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계열/학과의 소속으로 보며, 복학 시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 조치) 종전의 계열/학과 명칭 변경 및 통폐합, 계열 모집에 따른 학생 소속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명칭변경, 통폐합된 계열/학과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폐지 등의 경우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계열/학과의 소속으로 보며, 복학 시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 조치) 종전의 계열/학과 명칭 변경 및 통폐합, 계열 모집에 따른 학생 소속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명칭변경, 통폐합된 계열/학과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폐지 등의 경우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계열/학과의 소속으로 보며, 복학 시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08. 2. 19)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09. 2. 27)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09. 10. 7)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 조치) 종전의 계열/학과 명칭 변경 및 통폐합, 계열 모집에 따른 학생 소속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명칭변경, 통폐합된 학과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폐지 등의 경우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학과의 소속으로 보며, 복학 시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10. 8.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10. 12. 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11. 2. 2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11. 4. 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하되,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제2항 및 제51조 제1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하되,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부)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부)과의 명칭변경 및 통폐합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명칭변경, 통폐합된 학과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폐지 등의 경우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학과의 소속으로 보며, 복학 시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학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개정 학칙 제24조에 따른 졸업학점의 적용은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의 학점이수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업연한 2년제 학과

구분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졸업학점	80	74

나. 수업연한 3년제 학과

구분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졸업학점	120	112

②전과한 학생의 졸업학점은 전입학과 당해 학년도 기준을 적용한다.

③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졸업학점은 재입학 또는 편입학한 해당 학과의 당해 입학학년도 기준을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8월 5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하되 제23조의7, 제24조제5항 및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하되, 제22조의3제1항 및 제31조는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부)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부)의 명칭변경 및 통폐합에 따른 학생의 소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아래와 같이 명칭변경 또는 통폐합된 학과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부) 폐지 등의 경우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학과(부)의 소속으로 보며, 복학 시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변경 전 학과(부)	변경 후 학과(부)
스마트팩토리시스템운영과	스마트팩토리운영과
애완동물학부	반려동물학부
자동차·기계학부	스마트자동차기계학부
철도전기·전자학부	철도전기신호학부
호텔관광학부	호텔관광과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부)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학생의 소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아래와 같이 명칭변경된 학과(부) 소속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 전 학과(부)	변경 후 학과(부)
스마트자동차과	스마트융합클린룸설비과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4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 및 수료 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24조 및 제31조는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2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3조(학과(부)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제31조 [별표 1]의 학과(부)의 명칭변경 및 통폐합에 따른 학생의 소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아래와 같이 명칭변경 또는 통폐합된 학과(부)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부) 폐지 등의 경우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학과(부)의 소속으로 보며, 복학시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변경 전 학과(부)	변경 후 학과(부)
K-마이스터스쿨 K-푸드전공	K-마이스터스쿨 K-푸드조리전공
외식조리과	외식조리학부
글로벌명품조리과	외식조리학부
제과제빵과	제과제빵학부
글로벌제과제빵과	제과제빵학부
철도전기신호학부	철도교통학부
디지털영상·비주얼디자인학부 1인미디어전공, 방송영상콘텐츠전공	영상·시각디자인학부 영상콘텐츠전공
디지털영상·비주얼디자인학부 디지털비주얼디자인전공	영상·시각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 및 수료 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23조의6 및 제24조, 제31조는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2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 학칙을 따른다.

제3조(학과(부))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제31조 [별표 1]의 2024학년도 입학자 적용 학과(부)의 명칭변경 및 통폐합에 따른 학생의 소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아래와 같이 명칭변경 또는 통폐합된 학과(부)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부) 폐지 등의 경우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학과(부)의 소속으로 보며, 복학 시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변경 전 학과(부)	변경 후 학과(부)
K-마이스터스쿨 베이커리카페전공	K-베이커리학부
컴퓨터정보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과
철도교통학부	철도차량운전과
자율전공학부 경호보안전공	자율전공학부 스포츠경호전공
영상·시각디자인학부 영상콘텐츠전공	영상·시각디자인학부 방송영상제작전공
영상·시각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영상·시각디자인학부 시각·멀티디자인전공
글로벌호텔외식과	관광호텔외식과
호텔관광과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5.27.>

제 호

학 위 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본 대학                   학과(부)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 0    년    월    일

우 송 정 보 대 학   총 장

학위번호:

제 호

증 서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본 대학 학과(부)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 0 년 월 일

우 송 정 보 대 학 총 장

학위번호: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 수 료 증 서

성 명

생년월일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학과(부)    학년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2 0    년    월    일

우 송 정 보 대 학 총 장

제 호

학 위 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본 대학 학과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 0 년 월 일

우 송 정 보 대 학 총 장

학위번호:

[별표 1]

## 학과(부)별 전문학사 학위 종별 현황 <개정 2023.1.30., 2024.01.30.>

2023학년도 입학자 적용			2024학년도 입학자 적용		
학과(부)		학위(전문학사)	학과(부)		학위(전문학사)
K-마이스터스쿨	K-뷰티전공	미용	K-마이스터스쿨	K-뷰티전공	미용
	K-푸드조리전공	외식조리		K-푸드조리전공	외식조리
	베이커리카페전공	제과제빵		팻케어전공	동물
	팻케어전공	동물		K-베이커리학부	베이커리학부전공
뷰티디자인학부	헤어디자인전공	미용	디저트카페전공	미용	
	의료미용전공		뷰티디자인학부		헤어디자인전공
반려동물학부	동물관리전공	동물	반려동물학부	의료미용전공	동물
	애견미용전공			동물관리전공	
동물보건과		동물보건	동물보건과		동물보건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	외식조리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	외식조리
	글로벌호텔조리전공			글로벌호텔조리전공	
제과제빵학부	제과제빵전공	제과제빵	제과제빵학부	제과제빵전공	제과제빵
	글로벌제과제빵전공			글로벌제과제빵전공	
글로벌호텔외식과		호텔경영	관광호텔외식과		호텔경영
글로벌실용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	예술	글로벌실용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	예술
	실용댄스전공			실용댄스전공	
	K-pop전공			K-pop전공	
일본외식조리학부	일본조리전공	외식조리	일본외식조리학부	일본조리전공	외식조리
	일본제과제빵전공			일본제과제빵전공	
스마트팩토리기술과		공업	스마트 자동차기계학부		공업
스마트 자동차기계학부	기계전공	공업	스마트 자동차기계학부	기계전공	공업
	자동차정비전공			자동차정비전공	
컴퓨터정보과		공업	컴퓨터소프트웨어과		공업
소방안전관리과		공업	소방안전관리과		공업
리모델링건축과		공업	리모델링건축과		공업
보건의료행정과		보건	보건의료행정과		보건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유아교육과		교육	유아교육과		교육
자율전공학부	운동재활전공	체육	자율전공학부	운동재활전공	체육
	스포츠경호보안전공	경호		스포츠경호전공	체육
영상·시각디자인학부 영상콘텐츠전공		디자인	영상·시각디자인학부 방송영상제작전공		디자인
영상·시각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영상·시각디자인학부 시각·멀티미디어전공		
철도교통학부	기관사전공	공업	철도차량운전과		공업
	철도차량시스템전공		파티시에과		제과제빵
	철도전기신호전공		마스터셰프과		외식조리
철도토목과		공업	스마트팩토리과		공업
호텔관광과		관광	산업안전과(야간)		공업
			철도토목안전과(야간)		공업

**학과별 학사 학위 종별 현황** <신설 2019.5.27. 개정 2024.01.30.>

학과	학위(학사)
간호학과	간호

[별표 2] <개정 2019.1.11., 2022.2.23., 2024.01.30.>

**계약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

모집단위	정원	학위종별	비고
스마트기기생산과	50	공업전문학사	고숙련일학습병행



[별표 3] <개정 2023.8.7.>

## 설치학과(부) 및 입학정원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학과(부)	수업 연한	입학정원 (주간)	학과(부)	수업 연한	입학정원 (주·야간)		
K-마이스터 스쿨 K-뷰티전공	2년	50	K-마이스터 스쿨 K-뷰티전공	2년	50		
K-마이스터 스쿨 K-푸드조리전공	2년	30	K-마이스터 스쿨 K-푸드조리전공	2년	30		
K-마이스터 스쿨 베이커리카페전공	2년	30	K-베이커리학부	2년	50		
K-마이스터 스쿨 펫케어전공	2년	30	K-마이스터 스쿨 펫케어전공	2년	30		
뷰티디자인학부	2년	90	뷰티디자인학부	2년	90		
반려동물학부	2년	70	반려동물학부	2년	70		
동물보건과	2년	30	동물보건과	2년	30		
외식조리학부	2년	110	외식조리학부	2년	100		
제과제빵학부	2년	110	제과제빵학부	2년	100		
스마트팩토리기술과	2년	40	자율전공학부	2년	99		
글로벌호텔외식과	2년	40	관광호텔외식과	2년	40		
글로벌실용예술학부	2년	80	글로벌실용예술학부	2년	70		
일본외식조리학부	2년	60	일본외식조리학부	2년	60		
스마트자동차기계학부	2년	60	스마트자동차기계학부	2년	60		
컴퓨터정보과	2년	40	컴퓨터소프트웨어과	2년	30		
리모델링건축과	2년	40	리모델링건축과	2년	30		
영상·시각 디자인학부	영상콘텐츠전공	2년	60	영상·시각 디자인학부	방송영상제작전공	2년	30
	시각디자인전공	2년	30	시각멀티미디어전공	2년	30	
소방안전관리과	2년	60	소방안전관리과	2년	30		
철도토목과	2년	40	철도차량운전과	2년	60		
철도교통학부	2년	100	간호학과	4년	60		
간호학과	4년	60	보건의료행정과	2년	50		
보건의료행정과	2년	40	사회복지과	2년	70		
사회복지과	2년	70	유아교육과	3년	56		
유아교육과	3년	56	파티시에과*	2년	30		
자율전공학부	2년	90	마스터세프과*	2년	30		
호텔관광과	2년	40	스마트팩토리과*	2년	30		
			산업안전과(야간)*	2년	30		
			철도토목안전과(야간)*	2년	30		
<b>합계</b>		<b>1,556</b>	<b>합계</b>		<b>1,475</b>		

\* 성인학습자전담과정 학과